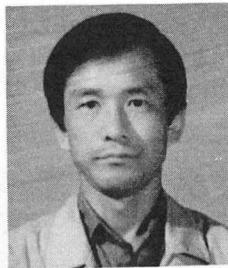


# 수의사가 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문제점

## 양성돈 살처분 늑장, 전염 확대 우려



박 해 병  
(사조축산<주>)

'87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돼지오제스키병의 미발생국이었던 것이 '87년 초여름의 발증보고로 국내 질병에 하나가 추가되었다.

실제로 '87년 이전의 의심이 없어질 소문은 모농장을 기점으로 퍼져 나왔으나 확인되지 못했고, 발병 얼마후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어 관심밖의 일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는 농장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괴질이 한 차례 스쳐간 것으로 자위케 되고, 자연스럽게 종돈분양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으나, 규모가 작은 농장이나 큰 농장들 모두가 임상증상에 의한 조치로 일관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첫 발생농장의 질병문의 전화에서 돈콜레라와 유사한 소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식견을 가진 분들의 임상진단도 돈콜레라를 진단한 정도가 되니 공표되지 않은 발병이나 질병의 확산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여기서는 방역상의 문제점을 생각하여 효과적일 수 있는 박멸대책을 평소 느낀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방역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오제스키병 발병기전이 특이하여 모든 감염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변식성적의 저하가 뚜렷하나, 다른 원인으로 지나쳐 버리기 쉽고 어린 일령에서 폐사가 높으나 내과한 육성돈은 출하일령이 지연되는 정도이다. 또 분만시나 다른 질병의 감염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정도로 잠복감염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농장에서는 임상증상에 의한 질병 감염여부는 판단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이상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은연중 질병의 확산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둘째 발병돈이나 양성돈의 검출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의 조치가 안이했다고 본다. 처음의 발병은 방역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처음 조치(?)이므로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는 등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두번째 이후도 시일을 끌게 되고 집단화 지역에서는 더욱 나약한 태도로 대응해야만 된다는 것은 오제스키병 박멸대책이라는 대명제에 걸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특히 '88~89년의 집단양돈단지에서 양성돈의 검출은 향후 오제스키병의 박멸대책을 재고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게 되었으며, 처리문제를 둘러싼 잡음과 조치가 양돈업계의 관심사로 대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는 살처분 보상금액이 미흡했고, 6공화국 들어서 민주화 물결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었다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세째로 이미 4년여동안 질병의 확산이 가능했을 것이나,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멸대책은 양돈인에게는 보다 철저한 보신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한 결과가 되었다.

역학조사에 대한 비협조, 의심이 갈만한 환축의 조기도태 및 은폐, 채혈검사에 대한 극심한 거부, 이웃 농장간 협동심(?)의 발휘 등 다채로운 양상을 보였다.

만일 처음부터 4년간의 질병유입후 첫 발증이라는 정도에 접근되었다면 양돈인의 협조없이 성급한 박멸대책을 세웠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양돈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은 공식적인 행사(?)에는 입조심을 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순수한 정보나 의견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는데 사용치 말아야 될 것이다. 지난해의 보상금 지급규정에 대한 개선의제의 문제화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다행히 금년 4월의 양성돈 검출농장은 주변농장에서 협조하여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네째 국제화 되어가는 세계추세에 대응하는 방역당국(축산국 위생과,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시·도산하 가축위생시험소, 시·군·읍·면의 축산담당 등)의 기구나 인원의 확대·확충이 미흡하다.

국내에 없던 질병의 외래유입은 첫째는 동물검역소의 실수 혹은 무지일 것이나, 역학조사를 위한 발병후의 인원동원은 극히 미흡했다. 이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기구의 조정이나 권한의 부여가 뒤따르지 않는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외래유입 가능성에 있는 질병들에 대응할 방역당국의 확대개편과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유명무실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통구조의 개선 및 양돈인의 협동적인 자기희생이 뒤따라야 하겠다.

보상가의 낮은 수준은 가능한대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한 결과가 되었으며, 유통

상이나 양돈인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체형이나 벌금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양성돈이 검출된 농장은 사법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못하는 조치는 해줘야 될 것이며, 발병 등의 농장과 인접한 지역은 다같이 유통 등의 제한을 강력히 시행하며, 전 농장의 채혈검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상에 열거한 문제는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사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할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희생정신을 과연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줄 믿고 있다.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은 거론을 한 일이나 첫째 철저한 검사와 도태가 필요하다. 현재 검색율로 보아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박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철저한 이동제한이다.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통로가 여러곳인 경우가 많고, 소규모인 곳은 비교적 통제가 쉬우나 경비가 과중할 것으로, 어느 상황이건 양돈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패의 관련일 수 밖에 없다.

세째 양성돈의 신속한 도태·매장이 필요하다. 양성돈은 매개체역할을 하거나 기회가 있으면 매개체로 변하게 되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째 현재 종돈장에 대한 6개월마다 시행되는 채혈검사를 다소라도 당겨서 시행되어야겠다. 번식회전율로 보아 채혈이 가능한 모든의 중복이 상당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채혈검사가 가급적 많은 개체에 해당되어야만 검색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관·민·연·학(官民研學)의 연대의식의 강화이다. 이미 '84년 혹은 '85년 수입돈의 번식기(繁殖期)의 이상은 소문으로 양돈업계에 돌았으나, 여러 이유로 공식적으로 노출되지 않은채 2~3년이 지났다. 보다 편안스럽게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의 모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꾸준한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졸필을 줄인다.